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리틀팍스어학원 LITTLE FOX LANGUAGE CENTER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677 최초 등록일: 2008년11월17일 최종 등록일: 2023년07월18일	http://school.littlefox.co.kr info@littlefox.co.kr
--	---	---

리틀팍스 어학원 정 보 공 개 서

(주)리틀팍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09

(주)리틀팍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전화번호 : 02-538-8760

팩스번호 : 02-538-3848

담당부서 : 여학원사업본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46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리틀팍스	리틀팍스 어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0.2.25	2000.2.25	양명선, 김원재	02-538-8760	02-538-3848
	법인등록번호	110111-1890676	사업자등록번호	214-86-5059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양명선 (주)리틀팍스	리틀팍스 어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선, 김원재	02-538-8760	02-538-3848
대표이사	김원재 (주)리틀팍스	리틀팍스 어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선, 김원재	02-538-8760	02-538-3848
사용인 (감사)	정제철	리틀팍스 어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양명선, 김원재	02-538-8760	02-538-3848
계열회사	(주)리틀팍스어 학원	리틀팍스 어학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원재	02-6933-0579	02-539-3848
	법인등록번호	110111-4447648	사업자등록번호	120-87-605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양도 포함)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리틀팍스 어학원	(주)리틀팍스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
상 호	리틀팍스 어학원 OO센터	센터이름은 주로 OO동 이름을 사용 (예: 리틀팍스 어학원 대치센터)
상표(서비스표)	 리틀팍스어학원 LITTLE FOX LANGUAGE CENTER	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19092 (리틀팍스 로고가 등록되어 있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2,399,467	10,567,151	11,832,316	11,958,772	1,776,541	1,640,423
2022년	21,979,517	10,362,262	11,617,255	11,055,044	706,521	484,939
2023년	20,720,604	9,956,974	10,763,630	10,786,397	1,660,757	-453,624

* 그 상세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 외, 리틀팍스 웹사이트(www.littlefox.co.kr)를 통한 애니메이션 영어동화(전자출판물) 서비스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 표의 '1. 리틀팍스 어학원 (프랜차이즈)'는 당사 전체 매출액 중 교재비, 전자출판물사용료,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인 당사에 지불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원재	대표이사	1989.1 ~ 1999.9	(주)SK 과장	종합기획팀
			1999.10 ~ 2000.8	중부도시가스(주) 팀장	신규사업팀
			2000.9 ~ 현재	(주)리틀팍스 대표이사	어학원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양명선	대표이사	2000.2. ~ 현재	(주)리틀팍스 대표이사	컨텐츠 총괄
	정제철	감사	2011.3 ~ 2023.03	(주)리틀팍스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2023년 12월 31일	2	8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권)	‘리틀팍스 로고’와 ‘리틀팍스 어학원’ 이름을 사용	2006.3.15. 출원 2007.2.26.등록	출원 제2006-0000911호 등록 제45-0019092호	양명 선	2027.2.25. (2027.2.2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사업 현황

1. 리틀팍스 어학원을 시작한 날: 2003년 1월 1일

2. 리틀팍스 어학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리틀팍스	리틀팍스 어학원	양명선 김원재	2003.1.1.~현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팍스 빌딩)

3. 리틀팍스 어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틀팍스 어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교육 (외국어)	영어 어학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중인 리틀팍스어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5	65	-	66	66	-	68	68	-
서울	8	8	-	8	8	-	8	8	-
부산	2	2	-	3	3	-	3	3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1	1	-	2	2	-	3	3	-
광주	9	9	-	8	8	-	8	8	-
대전	6	6	-	6	6	-	6	6	-
세종	2	2	-	2	2	-	2	2	-
경기	13	13	-	15	15	-	16	16	-
강원	2	2	-	2	2	-	2	2	-
충북	3	3	-	2	2	-	2	2	-
충남	3	3	-	3	3	-	3	3	-
전북	5	5	-	4	4	-	4	4	-
전남	3	3	-	3	3	-	3	3	-
경북	5	5	-	5	5	-	5	5	-
경남	1	1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점 수 (직영점제외)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3	2			2	65
2022	65	4	3			66
2023	66	2				68

*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 2와 같습니다.

6. 리틀팍스 어학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은 리틀팍스어학원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점사업자 1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가맹점 말 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68	530,908	6,458	1,893,888	27,258	36,168	300,944	
서울	8	985,167	9,342	1,893,888	16,072	233,448	3,334	
부산	3	해당없음		-		-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		-		5곳 미만
인천	3	해당없음		-		-		5곳 미만
광주	8	436,893	4,206	891,048	8,392	164,400	1,370	
대전	6	746,924	8,676	1,719,624	17,196	358,392	3,145	
세종	2	해당없음		-		-		5곳 미만
경기	16	504,297	6,613	1,252,728	14,748	115,080	2,135	
강원	2	해당없음		-		-		5곳 미만
충북	2	해당없음		-		-		5곳 미만
충남	3	해당없음		-		-		5곳 미만
전북	4	해당없음		-		-		5곳 미만
전남	3	해당없음		-		-		5곳 미만
경북	5	338,664	4,766	476,760	9,535	253,176	2,149	
경남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하는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연간 평균 매출액 = 월간 평균 학생수 × 추정 수강료 × 12개월	
월간 평균 학생수	당사의 인터넷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의 월간 평균 학생수
추정 수강료	추정 수강료(274,000원)= 수강료(250,000원) + 교재비(24,000원)
	당사의 인터넷시스템에는 수강료는 등록하지 않고 있고 또한 지역이나 학원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강료는 추정한 것입니다. 교재비는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월평균 교재비입니다. 현재 학원 관련법에는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재료비, 모의고사비 등도 수강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교재비만 추가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리틀팍스어학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8	3465일(9년 6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리틀팍스 어학원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9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15,178	3,093	12,085	
판촉	(비공개)	연중	15,178	3,093	12,085	

- ㈜리틀팍스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틀팍스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의 광고 지출 내용과 어학원의 광고 내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도곡동 지점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	02-561-006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리틀팍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학원의 임대비, 인테리어공사비, 시설 및 비품구입비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학원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금	아래 표 참조 (부가세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최초 계약기간 중의 미경과 일수와 일할지 후 7일 이내에 반환	가입비, 교육·훈련비, 영업표지사용대가 등 가맹점 오픈 후 소멸되는 비용	아래 계약서 제9조 제2항 참조

<가맹금>

	신규로 리틀팍스 어학원을 오픈하는 경우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리틀팍스 어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지역이 반경 700 m 인 경우	전국 동일	1,000만원	학생수	200명 초과	없음
				151명 ~200명	300만원
				101명 ~150명	600만원
				100명 이하	1,000만원
영업지역이 반경 700 m 를 초과한 경우	영업지역의 면적에 비례				
	예컨대, 300명의 원생으로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리틀팍스 어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지역을 반경 700 m(면적=1.54 km ²)이 아닌 반경 1 km (면적=3.14 km ²)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가맹금 = 반경 700 m 가맹금 + 추가 면적 가맹금 = 0원 + (3.14km ² -1.54km ²) ÷ 1.54km ² × 1,000만원 = 약 1,000만원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계약서 제9조 : 가맹금>

- ② 가맹금은 반경 700 m 의 영업지역을 기준 일천만원(1,000만원)으로 한다. 단, 반경 700 m 를 초과할 경우 가맹금은 영업지역의 면적에 비례한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학생수 현황”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 보증금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만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잔존 채무액이 있는 경우	아래 계약서 제10조 제1항 참조

<가맹계약서 제10조 : 계약이행보증금>

- ① 가맹점사업자는 교재비, 전자출판물사용료 등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계약종료 후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부가세 포함)
가맹금	1,000만원 (이미 운영중인 학원이 전환하는 경우 학생수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
계약이행보증금	100만원

4)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위의 (1)과 (2) 이외에도, **당사에는 지급하지 않지만** 귀하가 가맹점을 오픈하기 이전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학원 건물 임대보증금, 인테리어공사비, 책걸상 및 사무실 비품, 광고비 등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실 평수 6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지급기한	비고
총 계		105,000 ~ 136,000			
인테리어	자율결정	50,000 ~ 60,000	833 ~ 1,000	계약일정에 따름	BI 제공
냉, 난방 공사	자율결정	10,000 ~ 14,000		협의	
간판, 외부썬팅	자율결정	5,000 ~ 7,000		협의	BI 제공
시설비	자율결정	35,000 ~ 40,000		설치 시	책상, 의자, 컴퓨터, CCTV, 수업용TV등
광고비	자율결정	1,000 ~ 10,000		협의	전단, 신문, 차량 등
기타	자율결정	4,000 ~ 5,000		주문 시	스코어 자석보드, 소모품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학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어학원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어학원 오픈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학원의 시설에 관한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8조 : 학원의 시설>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간판, 외부 창문, 출입문, 프런트 데스크, 선생님 수업용 테이블, 강의실 TV(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컴퓨터실, 도서관, 차량도색 등 학원시설을 시공한다.
- ② 가맹본부는 학원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별첨 3] “인력 및 시설 (변경) 계획”을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후 시공한다. 단,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할 시설과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후 2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시설에 대해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진을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 절차
가맹희망자	- 입지 선정 기준은 교육환경의 적합성과 수익성입니다. -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면, 가맹본부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선정기준에 적합한지와 당사의 가맹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선생님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선생님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학원 관련 법률에 의한 설립 · 운영자의 자격조건에 부합한 자	
내외국인 선생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로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자 (E2, F4, F2 소지자) - 한국인 이중언어 사용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리틀팍스 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사업자 상황에 따라 컴퓨터실과 도서관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8) 가맹금의 분납

당사에서는 가맹금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전자출판물	가맹본부	학생당	다음 월 15일	반환없음	사용료	아래 계약서

사용료		월 5천원	이내		후불제	제12조 참조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비 50% 중, 가맹점수 비율 따라 산정	공지후 1개월 이내	반환없음	광고 집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부담
점포환경개선금	계약기간중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강요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비용부담 없음					

<가맹계약서 제12조 : 전자출판물 사용료>

- ① 가맹점사업자는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학생이 숙제 할 때 교재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전자출판물 사용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전자출판물 사용료는 전월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1일 평균 학생수를 기준으로, 1인당 오천원(5,000원)으로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가맹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받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및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내 용	시기
교육	내외국인 선생님의 가맹본부 교육이수	년 1회
	Teacher's Guide 준수	
	교재 사용	
시설	학생들의 영어 전자도서관(e-Library) 이용도	
	학생들의 영어 도서관(Book Club) 이용도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시설 (변경) 계획”의 준수 - 간판, 수업용 테이블, 강의실 TV, 컴퓨터실, 도서관 등	

참고로, 학원의 점검에 관한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5조 : 학원점검>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 가맹학원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가맹학원의 점검은 선생님의 가맹본부 교육이수, 커리큘럼 및 Teacher's Guide 준수, 교재 사용, 학원의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③ 가맹본부는 학원점검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15일부터 그 기준

에 의하여 점검한다. 학원점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재가맹금	가맹금의 10% 아래 표 참조(부가세 포함)	계약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없음	아래 계약서 제11조 참조

<재가맹금>

	가맹금		재가맹금
영업지역이 반경 700 m 인 경우	전국동일	1,000만원	100만원
영업지역이 반경 700 m 를 초과한 경우	영업지역의 면적에 비례 영업지역을 반경 1 km로 확대한 경우	가맹금= 반경 700 m 가맹금 + 추가 면적 가맹금= 1,000만원 + (3.14km ² - 1.54km ²) ÷1.54km ² ×1,000만원 =약 2,000만원	200만원

<가맹계약서 제11조 : 재가맹금>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는 교육·훈련비, 영업포지 사용에 대한 대가,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 재가맹금을 계약 갱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재가맹금은 재가맹 시점 가맹금의 10 % 로 한다. 이미 운영 중인 학원이 가맹본부의 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받았던 가맹금의 감액 또는 면제의 혜택은 재가맹금 산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 (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 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단,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리틀팍스 어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지만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
는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6조 : 계약의 종료와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가맹

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확인서를 받은 후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의무이행 이전에 반환이 있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철거 내지 제거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교재나 물품 중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을 반품할 수 있다.
- ⑥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리틀팍스 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리틀팍스어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리틀팍스어학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당사가 외부업체와 공급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 가격을 공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매에 대한 강제는 없으며, 협상한 가격 보다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커리큘럼 및 교재	-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에 의거 수업하고 이에 필요한 일정 분량의 교재를 사용. 단,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 가능. 사전에 가맹본부와 상호 협의 필요. -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않는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할 수 없음. 단,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른 영어교재를 추가로 사용 가능. 사전에 가맹본부와 상호 협의 필요.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가능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7조 : 교재의 공급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수준부터 영어권국가의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가맹본부가 최대한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 ② "교재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 5]와 같다. 단,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교재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에 의거 수업하고 이에 필요한 일정 분량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첨 6]"커리큘럼 및 교

재 변경사용 계획"을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른 영어교재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첨 7]"다른 영어교재 추가 사용 계획"과 해당 교재를 가맹본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받은 교재를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교재를 주문하고, 가맹본부는 입금 확인된 주문에 대해서 택배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이때 운송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 받은 지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통지 받는 즉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환불 또는 교체 처리하여야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과 선생님 이외의 다른 사람	커리큘럼 및 교재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가능
	전자출판물		
	온라인 숙제 시스템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		
	영어 도서관 시스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8조 : 전자출판물의 공급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선생님이 수업하거나 학생이 숙제 할 때 교재와 함께 사용할 전자출판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자출판물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전자출판물과 학원 및 학생관리 시스템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이상 전자출판물 사용료, 광고 및 판촉활동 분담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전자출판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출판물만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19조 : 온라인 숙제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녹음시스템 포함), 읽기, 쓰기(첨삭 시스템 포함), 단어의 숙제를 예습과 복습으로 나누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숙제(Homework)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숙제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가맹계약서 제20조 :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듣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서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5,000 편 이상 자체 제작하여 별도의 사이트 (www.littlefox.co.kr)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전자도서관 (e-Library)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가맹계약서 제21조 : 영어 도서관 시스템의 공급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학생들의 읽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영어 책 목록과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후 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책의 대출과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영어 도서관(Book Club) 시스템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도서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교재 (1개월 분량)		단어장 교재 (6개월 분량)	문법 교재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단계	가격				
C1~C2	24,000	-	-	홈페이지 공지	
C3~C4	24,000	10,000	-		
D1~D4	24,000		D3~D4 각 14,000		
E1~E4	24,000	12,000	14,000		

상품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수료증세트	23,000	홈페이지 공지	1 세트(10개)
독서노트	55,000		1Box(120권)
알림장	44,000		1Box(120권)
영어노트	55,000		1Box(120권)
수료증 은박로고	7,000		1 세트(100개)
칭찬 스티커	25,000		1 세트(200매)
Journey to the west 피규어	25,000		1 세트
리플렛(e-Library & Bookclub Guide)	7,500		1 세트(100매)
리플렛(어학원 소개)	15,000		1 세트(100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

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리틀팍스 어학원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은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면적 1.53 km ²)를 기본 단위로 함. (지역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과는 별도로,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독점적·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충지역 추가 제공 가능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계약 갱신 시, 상호 구두 합의 →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서에 상호 날인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조치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리틀팍스 어학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7조 : 영업지역의 보호>

- ① 영업지역은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면적 1.53 km²)를 기본 단위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고, 이 계약서의 별첨 지도에 그 지역을 명확히 표시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다.
- ③ 가맹본부는 영업지역과는 별도로, 학원(또는 상호 합의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700 m ~ 1 km (면적 1.61 km²)의 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독점적·배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충지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완충지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초 계약 또는 계약 갱신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호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포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0.7	-	9.3	-

2) 바로 전 사업년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29	71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학원·시설·선생님 등의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단,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제3조 제2항의 강의실 - 제8조 제2항의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시설(변경)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13조 제4항의 신규 선생님 및 직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수료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제15조 제1항의 학원 점검 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7조 제3항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 제17조 제4항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한 경우 -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 제20조 제2항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동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경우 - 제21조 제2항의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경우 - 제22조 제2항의 양수 또는 임차에 관한 계약 사본을 송부하지 않는 경우 - 제28조의 경업금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2호

귀하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5조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못한 경우	제25조 제2항 제1호~제10호
제7조 제2항의 영업지역에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제13조 제5항의 신규 선생님 및 직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1항의 최소 6년간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직접 개발하고 출판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제2항의 교재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1항의 전자출판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9조 제1항의 온라인 숙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제1항의 5,0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영어 동화를 자체 제작한 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21조 제1항의 2,000권 이상의 영어 책 목록과 퀴즈, 바코드시스템을 갖춘 영어도서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서상의 광고판촉분담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 중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가맹사업자가 천재지변, 파산 등으로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5조 제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외부의 강제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7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에 유익한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하여 영업방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으로 일괄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인터넷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단지, 귀하가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진행하는 일괄 계약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 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계약 갱신 시점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검토하여 환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와의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협의 → 양수인에게 당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 → 양도인·양수인 계약 체결 → 당사에 계약서 사본 7일 이내 송부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양수인이 기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하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상속인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	당사와 사전 협의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협의 →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에 계약서 사본 송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학원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리틀팍스 어학원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승인 절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경업승인 신청 → 당사 검토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리틀팍스 어학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선생님 수 및 학원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학원의 선생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학원 점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학원을 년 1회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V. 2.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내용이 같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리틀팍스 어학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수 비율 따라 산정	광고 및 판촉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광고·판촉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 → 전체 가맹점사업자 과반수이상의 서면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동의 → 확정
	브랜드광고+가맹점 모집광고	100%	-	
	가맹점 모집광고	100%	-	
판촉	우측의 ‘분담절차’에 따라 성격과 부담비율 결정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6조: 광고 및 판촉>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학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와 수강료할인,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시행 할 수 있다.
- 광고 및 판촉활동의 횟수·시기·방법·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의 지역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광고·판촉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전체 가맹점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인터넷상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의해 확정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1년간 예상 비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통해 공지하고, 각 가맹점사업자는 공지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기 15일 전에 그 내용과 예상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광고 및 판촉비를 지출한 후 1개월 이내에 비용 명세와 함께 그 결과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50% 부담한다. 가맹점사업자 간 개별 부담액은 총비용을 총가맹학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⑥ 전국단위 판촉활동을 위한 팜플렛·전단·리플렛 등의 제작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하며, 가맹학원에서 제공하는 수강료할인·경품·기념품 등의 비용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광고 및 판촉활동 집행 후 문안과 내용을 당사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방법, 전자출판물 및 애니메이션 동화 제작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측에 그 배상의 책임이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 기간	소요 비용
가맹 문의	전화 문의, 가맹조건 및 절차 안내	2~3일	IV.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1)~4) 참조
가능성 검토	school.littlefox.co.kr에서 가맹조건, 가맹계약서, 교육방침 및 교육과정 등 검토		
가맹 신청	school.littlefox.co.kr에서 가맹신청서 작성		
전화 통화	상호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추가 확인		
면담 및 현장실사	본사와 학원을 상호 방문하여, 구체적인 가맹 가능 여부 및 계약내용협의 (학원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현장 방문)	1일	
정보공개서 검토	정보공개서와 인근 10개(또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가맹학원 전체)의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검토 → 당사 및 인근가맹점 문의	5일	
홈페이지 오픈	개별 학원용 홈페이지 제공	1일	
예비원장 입문교육	리틀팍스 영어학원의 핵심 내용인 커리큘럼 / 온라인 숙제 시스템 / e-Library(영어 전자도서관 시스템) / Book Club (영어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실습 (기본 교재와 Book Club의 동화책 대여)	7일	
예비원장 심화교육	리틀팍스 영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입학시험 운영 / 선생님 교육 / 반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	1일	
가맹 계약	예비원장 교육결과에 상호 만족할 경우, 가맹계약 체결	1~2일	
가맹금 등 예치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채용	내외국인선생님, 상담/관리 직원 등 (모집 광고, 면접, 비자발급 포함)	1~3개월	
선생님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Teacher's Guide 및 수업, 학원 및 학생관리 시스템 등	1~2주	
시설 공사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기 등	1~2개월	
비품 구비	강의실 TV, 컴퓨터, 책상, 의자, 가구 등	3~4일	
인허가 취득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 사전·사후 인허가	-	
광고·홍보	차량현수막, 팸플렛, 리플렛, 전단지, 지역Community사이트 등 활용	1~2개월	
설명회 개최	학부모 설명회 개최 및 상담	1개월 전 부터	
입학 상담	개별 입학 상담 및 레벨테스트후 반배치		
학원 개원	개원 및 수업 진행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당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 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귀하와 체결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에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단,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귀하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판촉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판촉행사시 인력지원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컨설팅)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시	선생님 및 직원 채용, 인력 개발, 학생 지원,	가맹본부는 1년 1회 학원점검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컨설팅 의사를 확인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진단서 작성 → 가맹본부 담당자의 방문 및 면담 →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학부모 상담,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가맹점사업자 컨설팅 요청 → 가맹본부는 컨설팅계획서(컨설팅내용, 기간, 컨설팅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진단서 작성 → 컨설팅관계자의 방문 및 면담 →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리틀팍스 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리틀팍스 어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가맹 및 신규 교육	2~3일	무료	(재)가맹금에 포함
심화 교육	1일(5시간)	실비	점심, 간식, 교육시설 이용료 등
원장 세미나	1일(5시간)	무료	당사 부담

또한, 귀하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교육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리틀팍스 어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원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 및 신규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교육 수료증을 받지 않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거나,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장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13조 : 채용 및 교육>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내·외국인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채용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외국인 선생님의 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학원 및 학생관리를 위한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선생님 및 직원이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거나 중지시킨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신규로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선생님 및 직원이 가맹본부의 교육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는 온라인과는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실비를 기준으로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교육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내용 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2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내용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내용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어학원사업팀(02-538-87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1년 ~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전국 리틀팍스 어학원 상세정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신한은행 가맹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214 - 86 - 50592
	상호명(영업표지)	(주)리틀팩스
	성명(대표자)	김원재
	주소(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47 (대치동, 리틀팩스 빌딩) (전화:02-538-8760)
예치가맹금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비공개)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 : (주) 신한은행		